



대한태권도협회

수신 17개 시도협회장
 참조 전 무 이 사
 제목 심사비 과다징수 보도 관련 대책 필요 (자료 요청)

1. 2013. 4. 9(화) sbs-TV 8시뉴스에 이어 6. 7(금)일자 KBS-TV 스포츠뉴스에서도 태권도 심사비와 회비 징수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본 회 및 시도협회가 심사비를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하고 목적외 사업비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비쳐져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전국 심사비의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며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래전부터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거론돼 온,

① 공공 심사비와, 개인 도장이 받는 심사관련 부대 경비의 철저한 분리 징수를 실시토록 하고,

② 이를 위해, 각 지역별 공공 심사비의 온라인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4. 본 회가 대태회 제2013-25호(13.1.17)로 각 시도협회의 심사비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시도협회의 경우 시군구지부가 임의로 심사집행비를 책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심사비 공개에 앞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본 회와의 심사위임계약 내용상 심사집행권은 시도지부가 책임지고, 시군지부에는 운영만 위임이 가능하므로 심사집행비를 시군구지부가 별도로 책정, 징수하는 형식은 논란의 소지 있음.

* 심사집행비는 시도협회에서 책정하고, 시군지부에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가능.

* 공공 심사비는 국기원, 본 회, 시도협회의 수수료까지만 포함되므로, 시군지부의 운영보조비를 시도협회의 집행비에 포함시켜야 함.

5. 또한 방송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심사비 외에 징수하는 회비와 각종 기금(연회비, 경기력향상기금, 상조회비 등)이 심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이의 성격과 징수 방법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2/4분기 도장지원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며(6. 20 목, 영월 예정), 이에 대한 토의자료로 귀 회의 심사집행비와 귀 회 산하 시군지부가 징수하는 심사집행비, 그리고 각종 징수 기금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13. 6. 13(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000 태권도협회 심사집행비

구 분	심사집행비	시군지부 집행비	각종 회비 또는 기금
1 품	00,000 원	00,000 원	1. 기금명 : 금액 : 2.
~			
5 단	00,000 원	00,000 원	

- * 시군지부가 각 품단별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징수할 경우, 별도 표로 작성.
- * 13. 1월 조사내용에 시군 징수내역이 빠진 시도가 대부분이고, 회비(기금)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끝.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장

